

주민 의견 제출서

명 칭	화성동탄(2)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	
위 치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산척동 779번지 일원 (경관녹지 17)	
제안자	에이치엘로지스앤코(주)	
의견제출자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의견내용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화성동탄(2)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화성시장 귀하